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03
----------	--------

제출년월일 : 2024.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 이유

지역사회에 고품질 정보문화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도서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제22조(수탁자의 선정), 제23조(위탁협약)

### 2) 추진 필요성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및 능률성 확보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영어 프로그램 포함)의 기획·운영
-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라. 위탁시설의 개요

(단위 : m<sup>2</sup>, 명)

도서관명	소재지	면적	인력	위탁운영법인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도화4길 53	216.48	2	(학)서강대학교

마. 위탁기간 : 2024. 11. 1. ~ 2027. 10. 31. (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24년 예산기준)

1) 소요예산

-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비 교부금액 : 139,208천원

2)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도서관명	계	구 분		
		인 건 비	운 영 비	도서구입비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139,208	91,329	37,879	10,00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전문성) 전문성 있는 운영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2) (효율성) 직영 운영 시 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추가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되나, 위탁 운영 시 민간의 전문 인력 풀 및 인프라 활용 가능

자. 추진일정

- 1) 2024. 8. : 민간 위탁 관련 방침 수립, 수탁기관 공고 및 접수
- 2) 2024. 9. ~ 10.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
- 3) 2024. 10. : 위수탁 협약 체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2.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 능력

**제23조(위탁협약)**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협약 만료 전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